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93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(인)

2023년 8월 16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 이상민

⊙ 법률 제19693호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(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(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전단 중 "제2항에 따라"를 "제2항제2호에 대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3항 또는 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"제3항"을 "제3항 또는 제4항"으로,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(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(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
2.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.

법률 제196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중 "제13조제2항"을 "제13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3호 중 "호에서"를 "항에서"로, "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"을 "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의2.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법률 제196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전단 중 "취소된 해외작업장"을 "취소된 해외작업장(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축산물 수입이 중단된 해외작업장은 제외한

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,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